

梁誠之의 서적 정책과 『訥齋集』의 간행 경위*

李 鍾 默**

차 례

- | | |
|---------------------|---------------------|
| 1. 세조대 서적 관리 정책 | 4. 정조대 『눌재집』 간행의 의미 |
| 2. 세조대 서적 편찬 활동 | 5. 『눌재집』의 간행 경위 |
| 3. 성종대 서적 편찬과 관리 정책 | |

1. 세조대 서적 관리 정책

梁誠之(1415-1482)는 字가 純夫, 南原人으로 禮賓寺尹 梁九疇의 아들이다. 모친은 全州府尹 權湛의 딸이다. 양성지는 6세에 독서를 시작하여 9세에 글을 지을 줄 알았다. 세종 23년(1441) 進士·生員 시험에 합격하고, 또 文科에 제 2인으로 합격하여 이듬해 集賢殿 副修撰에 임명되었다. 여러 번 승진되어 집현전 直提學에 이르렀다. 그후 단종 복위사건으로 朴彭年 등이 誅殺되자, 사람들이 양성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공모했을 것이라 하였는데, 세조가 무관함을 직접 보증할 정도로 그에 대한 충애가 깊었다. 세조는 房玄齡이 太宗을 배반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을 때 태종이 즉시 고발한 자의 목을 벤 일을 거론하면서 적극적으로 양성지를 비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教授

호하였던 것이다.¹⁾ 양성지는 집현전이 혁파된 후, 세조 9년(1463) 弘文館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여 윤허를 받고 홍문관 提學이 되었다. 이후 이조판서와 대사헌, 공조판서 등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죽은 후, 諡號를 文襄이라 하였는데,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문기를 좋아하는 것을 文이라 하고,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襄이라 한다.

양성지는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博覽強記하고, 屬文을 잘하였다.²⁾ 이로 인해 일찍부터 집현전에 들어가, 국가의 문화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미 집현전에 있을 때부터 국방 문제 전문가로서 활약한 바 있거니와,³⁾ 세종 사후에도 여러 정책을 제안하였다. 단종 1년(1453) 1월 7일 <論君道>(『눌재집』 권1)를 올려 단종에게 治國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단종 2년 1월 27일에는 『皇極治平圖』를 편찬하여 바쳤다. 皇極, 敬天, 愛民, 奉先, 事大, 備邊, 正心, 修身, 齊家, 治國, 任人, 納諫, 賞善, 罰惡 등의 항목을 그림으로 배치하고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 나이 어린 단종을 위한 圖說로 국가 경영의 큰 틀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⁴⁾

세조가 등극한 후 세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양성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 정책을 제안한다. 집현전 직제학으로 있던 양성지는 세조 1년(1455) 7월 5일에 <論君道十二事>(『눌재집』 권1)를 지어 올려 세조의 통치 방향을 제시한 바 있거니와,⁵⁾ 세조 2년 3월 28일 <便宜二十四事>(『눌재집』 권2)를 올렸으며,⁶⁾ 세조 3년 3월 15일 判書雲觀事로 있으면서 <便宜十二事>(『눌재집』 권2)

1) 『세조실록』 2년 6월 2일 기사에 자세히 보인다. 양성지는 집현전이 혁파될 때까지 계속 집현전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때 朴彭年, 河緯地, 李端, 柳誠源 등 사육신과 함께 근무하였으므로 친분이 매우 두터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실록 자료는 ‘CD롬 조선왕조실록’을 이용하였다.

2) 『세조실록』 9년 5월 30일 기사에 신숙주는 양성지가 젊어서부터 地理를 強記하였고, 그가 集賢殿에 있으면서 임무를 마칠 때를 당하면, 그 옛적에 생각하였던 一字를 손바닥 위에 쓰고, 집에 이르면 諸書를 다 상고하여 보았다고 하였다.

3) 세종 31년(1449) 5월 28일, <請龍行城兼備南方>(『눌재집』 권1)을 올렸으며, 그 이듬해 1월 15일 <備邊十策>(『눌재집』 권1), 문종 1년(1451) <東西兩界一體備禦>를 올린 바 있다.

4) 『눌재속집』에 그 그림을 풀이한 글과 양성지가 쓴 서문이 실려 있다.

5) <請改正田政兵制疏>(『눌재속집』 권1)이 이 해 윤6월에 올린 것이라 하나, 사실은 7월 5일 올린 <論君道十二事> 중의 일부를 축약한 것이다.

를 올렸다. 첨지중추원사로 옮긴 후 그해 10월 12일에는 <便宜四事>(『눌재집』 권2)를 올려 문물과 예악의 정비에 큰 힘을 쏟았다.⁷⁾

국방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세조 1년(1455) 11월 10일 平安道敬差官으로 평안도 지도를 올리면서 함께 <平安道便宜十八事>(『눌재집』 권1)를 올렸고, 세조 4년 10월 10일 行上護軍로 <衛部形名>(『눌재집』 권2)을 올린 바 있다.⁸⁾ 또 세조 10년 7월 24일 동지중추원사로 있으면서 <軍政十策>(『눌재집』 권3)을 올리고, 다시 11년 11월 15일과 그 이듬해 11월 2일 大司憲으로 있으면서 <軍國便宜十事>(『눌재집』 권3)를 올렸으며, 세조 13년 5월 28일에는 <北方備禦初疏十五策>을 올렸다.⁹⁾

양성지는 예종이 즉위하자, 공조판서로 6월 29일 <便宜二十八事>를 올려 국정 전반에 대한 치도의 방책을 제시하였고, 다시 성종이 즉위하자 성종 1년(1470) 1월 14일 공조판서로 <便宜十六事>(『눌재집』 권4)를, 성종 2년 12월 4일 지중추부사로서 <便宜三十二事>(『눌재집』 권4)를 올려,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남원군으로 봉호된 양성지는 성종 3년 1월 29일 <邊方四策>을 올리고, 같은 해 2월 20일 <便宜四事>(『눌재집』 권4)를 올렸다. 또 성종 3년(1472) 3월 29일, 왕명에 의하여 『經國大典』을 교정하여 올리면서 평소

6) <陳治謨諸條疏>(『눌재속집』 권1)는 이 글의 일부를 축약한 것이다.

7) 양성지는 그 후에도 세조 12년 8월 13일 <論除授人給牒頒祿疏>(『눌재속집』 권1)을 올렸고, 11월 12일 대사헌으로 時務八條를 올리는 등(『눌재속집』에는 八條 중 일부를 취하여 <陳時政六策>으로 실려 있다) 지속적으로 시무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였다.

8) 양성지는 직접 무반의 관직도 역임하고, 군사에 대한 실질적인 일도 하였다. 세조 5년 11월 22일 行護軍으로 있을 때 右廂大將이 되어 忠順堂 後苑에서 習陣을 한 바 있다. 또 세조 8년 8월 6일 行上護軍으로, 中樞院使 崔恒, 병조참판 金國光, 형조참판 徐居正, 중추원부사 韓繼禧, 형조참의 李芮 등과 함께 兵書를 講論하였다.

9) 양성지가 올린 奏議 중 실록에 실린 것은 대부분 정유자본 『눌재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일부는 목록만 실려 있고 본문은 일실되었다고 하였는데, 이들 역시 모두 실록에 전한다. <北方備禦初疏十五策> 외에, 세조 13년 7월 8일의 <北方備禦二疏三策>, 세조 13년 8월의 <北方備禦三疏四策>도 『눌재속집』을 간행할 때 수습되어 수록되었다. 그밖에 실록에 실려 있되, 『눌재집』에 빠진 대부분의 주의가 『눌재속집』에 수습되었다. 세조 14년 4월 17일의 <應旨上時弊六事>도 그러한 한 예이다. 『눌재속집』은 후술한다.

생각했던 문물 제도에 대한 견해 45가지를 파악한 <校定大典四十五事>〔『눌재집』 권4〕을 올렸다.¹⁰⁾ 성종 5년 7월 7일에도 <軍政四事>를, 성종 6년 6월 24일에는 <兵事六策>을, 성종 8년 7월 17일에는 <事大國斥遠人>을, 성종 9년 9월 16일에는 <請停棘城之役>을, 성종 9년(1478) 4월 3일에는 風俗과 學校에 대한 견해를 열두 가지로 정리하여 <風俗學校十二事>를 올렸으며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軍國秘計二事>를 올렸다.

이처럼 양성지는 국방과 국정에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였지만, 서적의 관리 체계를 진언한 것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 세조 3년(1457) 3월 15일 判書雲觀事로 있을 때 서적을 보관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성지는 다음과 같은 건의를 올렸다.

서적은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前朝 때에는 서적을 산 속에 있는 절에 간직하였는데, 本朝에 이르러 비로소 세 곳의 史庫를 忠州·星州·全州 등 고을에 설치했으니, 생각이 매우 周密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臣이 듣건대, 간직한 것이 반드시 모두가 秘書가 아니요, 모든 비서가 다 간직되지도 아니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3개의 사고 안에 진요하지 않은 雜書는 모두 찾아내도록 하소서. 『塔源錄』 및 承政院, 議政府, 六曹, 司憲府, 司諫院, 藝文館, 春秋官의 文書를 취하여 3질의 책을 가려뽑도록 하소서. 東國에서 撰述한 여러 書冊과 諸子百家, 文集, 州郡의 圖籍도 모두 구하여 사들이소서. 또 1질은 『宋史』, 『元史』 등의 책과 같이 모두 베껴 쓰게 하여, 세 곳의 사고에 간직하도록 하소서.¹¹⁾

10) 그 중 文教와 관련된 것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문관 봉교 이하의 관원은 『통감』, 『좌전』, 『續編』을 강할 것. (2) 전교서에서 印篆을 전달하되 문판 중에서 전서에 뛰어난 10인을 골라서 임용할 것. (3) 初場의 講經에 한유, 유종원, 소식의 글과, 『左傳』, 『通鑑』, 『宋鑑』, 『三國史』, 『高麗史』를 과목으로 할 것. (4) 종장에 詩와 賦, 表만 시험 보이고 箴, 銘, 記, 頌 등의 과목은 뺄 것. (5) 殿試에서 對策만 시험 보이고 表, 誥, 箴, 頌 등은 뺄 것. (6) 진사시에서 詩와 賦만 시험 보이고 箴과 銘은 뺄 것. (7) 畫員을 取才할 때, 山水, 人物, 翎毛, 花草 등으로 하고 竹은 花草에 포함시킬 것. (8) 選紙를 만드는 자는 장 100대, 全家徙徙, 재산물수에 처하고, 종이를 쓴 관리는 장 100에 영원히 서용하지 말 것.

11) <便宜十二事>, 『눌재집』 권2. 번역은 『국역조선왕조실록』을 따르되, 어색한 부분은 수정하였다. 이하 실록 인용도 같으며,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이처럼 양성지는 史庫의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서적의 관리를 청하였다.¹²⁾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바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세조 6년 3월 14일 양성지가 다시 건의를 올리자, 세조는 御札로 承政院에 하교를 내려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은 書冊이기 때문에 양성지에게 명하여 1질의 서책을 베끼게 하고, 장차 2질을 만들어 유실에 대비하고자 하였노라. 그러나 나라에 일이 많아서 措置할 수 없었고, 지금 또 양성지가 北京에 가야 한다. 藝文館의 書冊은 반드시 文臣들이 열람하기 때문에 파손되기도 하고 유실되기도 하니, 승정원에서 속히 일을 맡길 만한 자를 골라서 局을 설치하고, 온 나라의 여러 책을 거두어 모아서 먼저 摠目을 기록하라. 1질은 견고히 간수하되, 脫簡과 落字를 상고하여 修補하고, 또 板本이 있는 곳도 상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여전히 藏書의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세조 9년 5월 집현전이 혁파되었다. 이에 따라 집현전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적들을 예문관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세조는 세종이 애써 모은 책들이 산일될까 우려하여 양성지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조사케 하였다.¹³⁾ 5월 30일 일을 완료한 양성지는 집현전에서 소장하던 서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이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고 弘文館 설치를 건의하였다.

역대의 서적을 보건대, 名山에 간직하거나 秘閣에 간직하였던 것은 遺失을 대비하여 영구히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前朝의 肅宗이 비로소 經籍을 간직하였는데, 그 圖書印의 글을 하나는, ‘高麗國十四葉辛巳歲御藏書大宋建中靖國元年大遼乾統九年’이라 하였고, 다른 하나는 ‘高麗國御藏書’ 하였습니다. 숙종조로부터 이제까지 663년이 되었는데, 印文이 어제 한 것과 같이 文獻을 상고할 만하고, 이제 內藏된 萬卷의 서책은 그 때에 所藏하여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빌건대, 지금의 藏書 뒷면의 圖書印은 ‘朝鮮國第六代癸未歲御藏書本朝九年大明天順七年’이라 하고, 眞字를 가지고 이를 쓰며, 앞면의 圖書는 ‘朝鮮國御藏書’라 일컫게 하고, 篆字를 가지고 이를 써서 諸冊에 두루 표시하여, 萬世에 밝게 보이며, 新羅와 前朝 盛時의 例에 의하여 따로 年號를 세워서 標識를 삼게 하소서.

신은 또 그옥이 보건대, 임금의 御筆은 雲漢과 더불어 그 昭回함이 같으

12) 양성지의 생애와 서적 편찬 및 장서 제도는, 鄭亨憲, 『朝鮮時代書誌史研究』(한국연구원, 1983)에 자세히 다룬다. 본고는 이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13) 『눌재집』 권6 「遺事」.

며, 奎壁으로 더불어 그 찬란함이 같으니, 萬世의 臣子들이 마땅히 집을 세워서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宋朝 聖製의 예로는 모두 집을 세워 간직하였으되, 官을 설치하여 이를 관장하게 하였습니다. 太宗은 龍圖閣이라 하고, 眞宗은 天章閣이라 하고, 仁宗은 寶文閣이라 하고, 神宗은 顯謨閣이라 하고, 哲宗은 徽猷閣이라 하고, 高宗은 煥章閣이라 하고, 孝宗은 華文閣이라 하여, 모두 學士·待制·直閣 등의 관직을 두었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신 등이 御製詩文을 마갑하여 올립니다. 麟趾堂의 동쪽 別室에 이를 奉安하고 奎章閣이라 이름하소서. 또 여러 책을 소장하고 있는 內閣을 秘書閣이라 이름하여, 모두 大提學·提學·直閣·應教 등의 관직을 두소서. 堂上은 다른 관직을 兼帶하게 하고, 郎廳은 藝文祿官을 兼差하여 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¹⁴⁾

세조는 양성지의 건의를 시행할 만한 것으로 크게 칭상하였지만, 장서의 제도는 바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세조 9년 11월 17일에 가서야 세조는 홍문관 설치만을 허락하였다. 원래 양성지는 홍문관과 함께 崇文殿도 함께 두자고 청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송문전을 세우면 후세의 人主들 가운데 혹시 詩文 짓기를 좋아하여 오로지 述作만을 일삼을 자가 있을까 우려하여 따를 수 없다고 하고, 藏書閣을 弘文館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찬성을 하여, 이에 체계적인 藏書의 제도가 수립되게 된다. 그 후 성종이 즉위하자, 예문관을 따로 두어서 적 보관의 일을 맡게 함에 따라 홍문관에 소장하던 책은 예문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성종 10년(1479)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 예문관을 홍문관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古書筵廳에 예문관을 따로 설치하여 도서를 보관하게 된다.¹⁵⁾ 한편 양성지가 청한 왕실 도서에 인장을 찍는 문제도 곧바로 시행이 되어, 조선 후기까지 지속되었다.¹⁶⁾ 양성지의 청에 의하여 설치된 홍문관에는 兼官으로 大提學 1명, 提學 1명, 直提學 1명, 直館 1명, 博士 1명, 著作郎 1명, 正字 2명을 두게 하였다. 이에 따라 세조 9년 11월 23일 禮曹判書 朴元亨

14) <請建弘文館>, 『눌재집』 권2. 『눌재집』에는 '五月一十日'로 되어 있으나 실록과 대조할 때 '五月三十日'의 잘못이다.

15) <弘文館序>, 『눌재집』 권5.

16) 정조 5년 2월 13일 정조의 하교에서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지금까지 내각에 저장한 서적 가운데 뒷면에 있는 도서에는 '朝鮮國某歲御藏'이라 하고, 명나라 연호를 쓰되 垓字로 쓰며, 앞면에 있는 도서에는 '朝鮮國御藏'이라 하고 篆字로 써서 책에다 찍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정책이 후에도 계속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弘文館大提學이 되고 同知中樞院事로 있던 양성지는 提學을 겸하게 되었다.

홍문관의 설치로 장서 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나, 책의 출판과 보관 등 여러 문제에서 아직 완비되지 않은 일이 많았다. 이에 대서헌으로 있던 양성지는 세조 12년 11월 4일 17일 다시 <書籍十事>('눌재집' 권3)를 올려 서적의 관리와 편찬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건의한다.¹⁷⁾ 아래에 이를 간략하게 보인다.

(1) 『태조실록』, 『태종실록』, 『공정왕실록』 등을 모두 소할자로 4부씩 인하여 춘추관과 外三史庫에 각기 보관할 것.

(2) 실록이나 軍策처럼 소중한 책은 鐵錫으로 그 등을 장황하고, 綾段으로 책옷을 입히되, 고급스러운 장황을 한 책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실록 등을 소할자로 적고 간편하게 능단만 입혀 보관하여 사고에 대비할 것.

(3) 時政記가 급히 완비되지 않으면 문적이 산일되고 국가의 大典과 조정의 奏議가 인몰될 것이므로, 문종 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의정부, 육조, 대간, 승정원 등의 문서를 춘추관에 모아, 藝文祿官 5인, 兼官 5인으로 2인 1廳을 만들어 3년 동안 편마할 것이며, 춘추관 당상으로 하여금 살피도록 할 것.

(4) 外三史庫의 설치가 엄밀하지 못하고 화재나 병난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전주사고는 남원 지리산으로, 성주사고는 선산 금오산으로, 충주사고는 청풍 월악산으로 옮겨 보관하게 할 것.

(5) 중국에서 온 서적은 산일되어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文史는 다시 구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책은 모두 마감하여 질수가 부족한 것은 인출하거나 전사하거나 혹 구입하여 10질이 되도록 하여, 홍문관, 춘추관, 외삼사고에 각기 2질씩 보관하고, 춘추관과 외삼사고, 문무루에 보관되어 있는 건요하지 않는 책은 모두 예문관, 성균관, 전교서에 옮겨 섞이지 않도록 할 것.

(6) 홍문관, 춘추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元史』, 『宋史』 등의 책 1질은 초록하여 입히하는 忠義衛와 忠贊衛 및 耑房色, 그리고 여러 판아의 史典들로 홍문관, 춘추관에 가서 등사하게 할 것이며, 본문은 하삼도에 내려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전사하게 하고 두루 구입하여 3질을 구비할 것.

(7) 서책 판본은, 서울은 전교서에서 관장하지만, 지방은 관장할 곳이 없

17) 양성지는 세조 10년 4월 26일 다시 서적 문제로 건의를 올렸고, 이에 세조는 中樞院府使 李文炯과 같이 의논하여 事目을 만들어 오게 하였다고 하나, 자세한 내역은 알 수 없다.

고 어떤 책을 간행해야 할 지 알 수 없으며 또 조사하여 보수할 수도 없으므로, 승정원으로 하여금 팔도에 글을 내려, 해당군에서 소장한 판목과 그 상태를 전교서에 보고하게 할 것.

(8) 총통등록은 국가의 기밀문서인데, 춘추관에서 1질, 문무루에 21질을 소장하고 있으며, 홍문관에 1질, 군기시에 몇 질이 보관되어 있는데, 혹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한글로 번역하여 내외사고에 3질을 보관하고, 홍문관에 3질을 보관하게 할 것.

(9) 우리나라의 문적은 단군에서 조선까지 성대하지만, 근래 還紙의 이득을 노려 紙匠男女가 『승정원일기』나 절간의 경문을 훔치므로, 엄정한 법을 세워 시행할 것.

(10) 전교서에서 인출한 책 중 오래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 10질을 가져다가 홍문관 2질, 춘추관, 외삼사고, 전교서, 문무루, 예문관, 성균관에 각 1질씩 보관할 것.

이러한 서적의 출판과 보관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은, 불행히도 옳게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세조대 서적 편찬 활동

양성지가 서적의 관리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 자신이 세조대 서적 편찬에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양성지가 이 시기에 간행된 서적의 편찬에 관여한 것은 무척 많다. 세조 3년(1457) 9월 18일 세조의 명으로 성균관 儒生이 서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문관에 소장한 서적을 기록케 하여 刊行하는 일을 맡았으며, 세조 8년 1월 28일의 실록 기사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藝文館에서 文臣과 成衆官 등을 모아서, 提調가 되어 서적을 간행하는 일을 맡아 하였다 한다.¹⁸⁾ 또 세조 12년 10월 2일 申叔舟, 崔恒, 姜希孟, 丘從直, 任元濬, 成任, 徐居正, 李坡, 李芮, 金石梯, 鄭沈 등과 함께 왕명에 의하여 易·天文·地理·醫·卜筮·詩文·書法·律呂·農桑·畜牧·譯語·算法 등의 분야에 類聚를 揀選하였다.¹⁹⁾ 양성지는 세조 7년 7월 18일 교서관

18) 이때 桂陽君 李증이 왕명으로 예문관에 가서 그 서적을 다 실어 와서 文學을 아는 宗親 등으로 하여금 考閱하게 하니, 잘못된 것이 많아, 唱淮人 등의 僞身을 거두고 갖을 쓰고 그대로 출근하여서 贖罪하게 하였다고 한다.

제로로 있으면서 鎔字의 체계적 관리에 힘을 쓴 바도 있다.

여러 분야의 서적 편찬에 힘을 기울인 양성지이지만, 특히 역사서 편찬에 큰 공을 세웠다. 양성지는 이미 세종 28년 春秋館의 記事官으로 실록과 관련된 일을 맡기도 하였으며, 세종 31년에는 「고려사」 「지리지」 증수에도 관여한 바 있다. 그후 신숙주와 함께 世宗부터 睿宗까지 5대의 실록 편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高麗史全文』, 『高麗史全文節要』, 『東國通鑑』 등의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특히 『동국통감』의 편찬에는 양성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조 9년 9월 5일 왕명을 받들어 崔恒, 宋處寬, 李坡, 金壽寧 등과 함께 『東國通鑑』 편찬의 일을 맡게 되는데, 세조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錯亂하여 통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東國史略」, 「三國史」, 「高麗史」 등의 책을 참작한 책을 만들도록 한 것이다. 이 해 9월 27일의 실록 기사에 따르면 양성지는 궐내의 여러 儒生들을 거느리고 이 책의 편찬을 맡게 되었으며, 신숙주와 원람이 이를 감수는 일을 맡게 되었다.¹⁹⁾ 역사적으로 治道の 귀감을 제시한 『治平要覽』 역시 양성지에 힘입은 바 크다.

지리지와 지도의 편찬에 양성지는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이미 단종 1년 10월 17일 『朝鮮都圖』, 『八道各圖』, 『州府郡縣各圖』 등의 지도를 만들 때, 정인지의 추천을 받아 이 일을 관장하였으며,²¹⁾ 단종 2년 4월 17일 이미 실권을 잡고 있던 세조를 도와 팔도 및 서울 지도를 제작한 바 있다. 세조 1년 8월 27일에도 집현전 직제학으로 『세종실록』 「地理誌」를 편찬하고 아울러 地圖를 그리라는 왕명을 받았으며, 11월 10일에는 閔延, 茂昌, 處芮 등 평안도에 있는 세 읍의 지도를 제작하여 바쳤다. 세조 9년 11월 12일 同知中樞院事로 있으면서 鄭陟과 함께 『東國地圖』를 완성해 바쳤다.²²⁾ 성종 10년에는 盧思愼, 姜希

19) 세조 12년 11월 4일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올린 <諸書撰集時請竝撰史記兵書地圖> (『눌재집』 권3)는 이 때 편찬한 책이 易學, 詩文, 韻書, 字體, 樂譜, 天文, 風水, 醫藥, 卜筮, 農桑, 畜牧 등이라 하였다.

20) 세조 12년 7월 1일 「동국통감」을 강한 것으로 보아, 이 즈음 이 책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21) 그러나 단종 3년 2월 9일 下三道地圖 審定의 일이 왕명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22) 세조 12년 11월 4일 세조는 申叔舟에게 양성지가 편찬한 「東國圖經」을 木板에 새기겠다고 한 바 있는데 같은 책으로 보인다. 김안국의 신도비명에도 「동국도경」이라 하였다.

孟, 徐居正 등과 함께 『八道地理志』를 찬진하였다. 『東國輿地勝覽』의 편찬도 그의 힘을 입은 바 크다.²³⁾

지리서나 지도가 국방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거니와, 양성지는 병서에도 역시 뛰어나, 국방 관련 서적의 간행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세조 6년 2월 12일 『孫子註解』를 교정하였고, 세조 13년 7월 26일 壽城都正 李昌과 함께 <聖制攻守圖>를 考閱하고 兵器 제도를 상고한 바 있다. 또 세조 12년 11월 4일에는 『史記』, 兵書, 地圖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諸家の 兵法과 『史記』와 地圖를 모두 집록한 책자를 만들어 『資治通鑑綱目』과 『續編綱目』, 『東國史略』과 『高麗史』등의 책과 함께 進講할 것을 청한 바 있다.²⁴⁾

양성지는 세자의 교육이나 풍속의 교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다. 세조 11년 7월 25일 세조는 『孝行錄』이 보기에 조금 편리할 뿐이고, 『三綱行實圖』는 이미 지난 事跡을 기술하고 또 詩讚을 저술하였으나 구차한 例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양성지로 하여금 『삼강행실도』와 여러 사서를 상고하여 五倫에 관계되는 것 數十條를 찬술하여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양성지가 『五倫錄』을 찬진하여 올렸다.²⁵⁾ 또 세조 12년 윤 3월 29일 세조의 명에 의하여 세자 교육을 위하여 經史와 實錄 등에서 초록하여 『諡善書』를 편찬하고 書筵에 進講할 수 있게 하였다. 양성지가 세조 3년 6월 28일 判書雲觀事로 있으면서 <龍飛御天圖>를 지어 바친 것도 세자를 위한 것이었다.²⁶⁾

23) 徐居正의 <東國輿地勝覽序>에 따르면, 서거정이 『東文選』을 찬진했을 때, 성종이 梁誠之, 盧思愼, 姜希孟, 成任, 鄭孝恒, 金自貞, 李淑城, 朴崇質, 朴樞, 徐居正 등에게 詩文을 찾아 地誌에 넣으라 하여, 여러 전적을 조사해 넣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건대 양성지가 『팔도지지』를 편찬하고, 여기에 시문을 더하여 『동국여지승람』이 된 것으로 보인다.

24) 그러나 세자가 이 일을 반대하여 진전되지 못하였다.

25) 김안국의 신도비명에는 『三綱史略』이라는 책도 集撰하였다고 적고 있다.

26) 양성지가 지은 서문에 따르면, 세자가 <龍飛御天歌>를 내어 놓고 양성지 등으로 하여금 口訣을 定하여 읽어보기 쉽게 하였다. 그런데 古事를 끌어다가 지금의 일을 증거하고 反復하여 노래하고 읊었으므로, 偏次가 浩瀚하여 그 요점을 모아서 그 大綱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양성지가 325章의 시를 일곱 가지로 그 大綱을 만들어서 나누어 붙였다. 中上行은 先代에 왕업을 쌓아 올린 지 오래인 것을 말하는데 11章을 붙이고, 中心은 開國을 말하는데 2章을 붙이고, 中下行은 後聖께서 왕업을 유지하여 지키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16章을 붙이고, 左一行은 盛德을 말하는데 34章을 붙이고, 三行은 大功을 말하

양성지는 시학에도 관심을 보여, 『東文選』 편찬에 관여하였고, 唐·宋의 律詩 수집 首를 抄하여 『精明詩選』이라 이름을 붙여 올리고 후한 賞을 받았다고 한다.²⁷⁾ 그밖에 양성지는 農蠶書나 醫書의 간행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세조 5년 8월 20일 行大護軍으로 있으면서 왕명으로 農蠶書 간행을 위하여 校正하는 일을 맡게 되었지만, 편찬 자체도 그가 책임을 맡아 그해 10월 1일 『農蠶書』를 편찬하여 올렸다.²⁸⁾ 같은해 11월 30일 行大護軍으로 있으면서 『醫方類聚』를 校正하였다. 세조는 12년 7월 1일 關內에 간수하던 『大明講解律』과 『律學解頤』, 『律學辨疑』 등의 책을 校正하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서 각기 인간하여 반포하기 위하여 양성지에게 책임을 맡긴 것을 보면, 세조대 서적 간행에서 양성지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세조 2년 5월 26일 세종 때 詳定한 『儀註』를 문신으로 하여금 잘 배껴서 책을 만들도록 청하여 윤희를 받았고, 세조 13년 1월 15일 『海東姓氏錄』을 撰述하여 올렸다. 이와 함께 양성지는 세조 7년 8월 27일 藝文館提學 李承召, 行上護軍 宋處寬·金禮蒙, 禮曹參議 徐居正, 僉知中樞院事 任元溶 등과 함께 『明皇誠鑑』을 번역하는 일을 맡기도 하였다.

3. 성종대 서적 편찬과 관리 정책

양성지는 성종대에도 서적의 편찬과 관리에 큰 관심을 가졌고, 또 국가에서도 서적과 관련한 일의 상당 부분을 그에게 맡겼다.²⁹⁾ 성종대 南原君으로

는데 34章을 붙이고, 右一行은 天命을 말하는데 26章을 붙이고, 二行은 民心을 말하는데 2章을 붙이고, 그대로 역대의 誥와 題辭와 事類를 標識하였다고 한다. 이로 보건대 <용비어천가>를 圖說로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서문은 『눌재속집』에 수록되어 있다.

27) 그러나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양성지의 <쫄기>에 언급되어 있다.

28) 김안국의 신도비명에는 『畜牧書』도 集撰하였다고 적고 있다.

29) 성종 때에도 서적과 관련된 일은 양성지에게 많이 의존하였다. 한 예로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이 완성된 후, 성종이 이를 보관할 곳을 찾도록 명한 것도 양성지였다. 이에 양성지는 慶基殿 동편을 추천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 이 기사

조정 의 원로대신이 되어서도, 양성지는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서적을 널리 출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것을 주창하였다. 양성지는 성종 5년(1474) 韓明治, 韓繼禧와 함께 서적을 널리 인쇄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성종은 전라도 나주와 영광의 鹽稅를 내어 그 비용에 충당하게 하였다. 성종 8년 무렵 어느 정도 책판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당시 板堂이 협소하여 책판을 보관할 수 없었다. 이에 양성지는 성종의 윤허를 받아 인쇄경비를 제한 나머지, 板堂의 남쪽에 6칸의 건물을 새로이 세우도록 하였다.³⁰⁾

그후 양성지는 성종 13년 2월 13일 9조에 이르는 장문의 상서를 올려 서적의 편찬과 간행, 보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다.³¹⁾ 먼저 양성지는 자신이 세조의 『어제집』과 예종·덕종의 『어제집』을 완성하고, 그리고 성종의 詩文들도 典校外署에서 『어제집』으로 편찬하겠다고 청하였다. 어제집의 편찬 문제는 양성지가 세조 때 깊이 관여하였다. 세조 10년(1464) 세조는 太祖·太宗·世宗·文宗의 어제와 세조의 詩文들을 撰集하고자 하여, 양성지에게 校書館에서 郎官 1인을 거느리고 撰次할 자료를 구하도록 명한 바 있다. 그렇게 한 지 수개월 만에 『祖宗朝聖製集』 1권과 『御製詩文集』 3권을 修撰하여 올려, 麟趾閣에 秘藏하게 되었다. 양성지는 이를 이어 세조와 예종, 덕종의 어제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³²⁾

양성지는 이어 『高麗史大鈔』를 典校署에 내려 인쇄할 것을 청하였다. 원래 ‘權草’, ‘紅衣草’, ‘全文’ 등으로 일컬어지던 『고려사』는 세종 30년(1448) 鑄字所에서 인쇄하려 할 때 양성지가 監修하고 校正하여 인쇄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세종은 『고려사』가 公正하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반포를 금지하고 史臣들도 이 때문에 죄를 얻었다. 세조 4년 양성지는 權躋 등이 撰進한 編年高麗史를 권제의 아들 權驥와 함께 개수한 바 있다. 양성지는 이제 이 책을 인쇄할

가 보인다.

30) 李承召, <典校署板堂記>, 『三灘集』 권10.

31) 정유자본 『늘재집』에 빠졌으나 『늘재속집』에서는 실록에서 자료를 구하여 수록하였다. 원래는 12條였으나, 3條는 일실되었다고 한다.

32) 조선시대 어제집의 편찬에 대해서는, 줄고, 『藏書閣 소장 『列聖御製』와 국왕문집의 편찬과정』(『장서각』 창간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을 참고하기 바란다.

것을 청한 것이다.³³⁾

양성지는 이와 함께 弘文館에 소장하고 있던 5책의 『自警編』을 인쇄하기를 청하였다. 송나라 때 만들어진 『자경편』을 본떠 세종 때 『治平要覽』을 만든 바 있으나, 『치평요람』이 너무 방만하여 보기에 불편하므로 『자경편』 인쇄를 건의한 것이다. 양성지는 자신이 편찬에 관여한 『동국여지승람』과 『地理誌』의 간행도 함께 주청하였다. 양성지는 국방과 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양성지는 세종 때 『고려사』, 『地理誌』를 잔수하였고, 세조 때에도 地圖와 地誌의 일을 맡은 바 있다. 예종이 즉위하여서는 편찬을 빨리 마치라는 왕명이 있어, 예종 즉위년(1468) 겨울에 편찬을 시작하여 세조 9년(1478) 1월에 이 일을 완료하여 진상한 바 있다.

양성지는 전적의 체계적인 보관을 위하여 여러 종의 책자를 보관, 관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을 청하고 있다. 『三國史記』, 『東國史略』, 『高麗全史』, 『高麗史節要』, 『高麗史全文』, 『三國史節要』, 조선조의 역대 實錄, 『統簡曆錄』, 『八道地理誌』, 『訓民正音』, 『東國正韻』, 『東國文鑑』, 『東文選』, 『三韓詩龜鑑』, 『東國輿地勝覽』, 『承文啓錄』, 『經國大典』, 그밖에 京外戶籍, 京外軍籍, 各道の田籍·貢案·橫看, 그리고各司와 各邑의 奴婢에 대한 正案과 續案 등을 각각 네 부씩 갖추게 하는 외에, 세 곳의 史庫에 있는 긴요하지 않은 雜書들까지 모두 다 인쇄하게 하며, 또한 긴요한 서적들은 춘추관과 세 곳의 사고에 각기 한 부씩 수장하도록 청한 것이다.

또 지도가 민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우려하여 관부에서 보관하기를 청하였다. 고려 중엽 이전의 <五道兩界圖>, 선초에 제작된 李穡의 <八道圖>, 세종 때 鄭陟이 만든 <八道圖>와 兩界의 大圖와 小圖, 세조 때 양성지가 만든 <八道圖>와 岡延·茂昌·虞弼의 <三邑圖>, 또 바로 직전에 진상한 <沿邊城子圖>, <兩界沿邊防戍圖>, <濟州三邑圖>, 安哲孫이 만든 <沿海漕運圖>, 魚有沼가 만든 <永安道沿邊圖>, 李淳叔이 만든 <平安道沿邊圖>, 그밖의 下三道의 監司營에 있는 지도, 倭僧 道安이 만든 <日本琉球國圖>와 <大明天下圖>, 양성

33) 성종 13년 2월 28일, 『고려사』 간행 문제가 조정에서 논의되었는데, 해조에서 반대하였다. 양성지의 손녀사위인 송길의 말에 따르면 세조 때에도 이 책을 간행하게 했다가, 다시 정지하게 했다 한다.

지가 편찬한 『지리지』 안에 있는 <八道州郡圖>, <八道山川圖>, <八道各一兩界圖>, <遼東圖>, <日本圖>, <大明圖> 등의 지도 중, 가장 긴요한 것들은 홍문관에서 비장하고, 나머지도 의정부에서 보관할 것을 청하였다.

지리지나 지도 등은 모두 軍政에 관련된 것이거니와, 당시 중요한 병서였던 『銃筒騰錄』의 관리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미 세조 때에 崔山海와 양성지의 장인 邊尙觀에게 각기 한 부씩 주어서 오로지 火砲에 대한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다가 세조 18년(1436) 이 책들을 모두 闕內로 거두어 들이게 하였다. 그러나 양성지는 당시에 춘추관에 한 부, 文武樓에 21부가 보관되어 있어 근심된다면서, 어람용을 제외하고 모두 한글로 번역하여 內外 史庫에 각기 1부씩 보관하게 하되 해당하는 신하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고, 軍器寺에 1부를 두되 提調로 하여금 굳게 봉하도록 하며, 그 나머지 漢字로 적힌 것은 모두 불태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당시 영안도 관찰사가 영내 사람들에게 『고려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책자를 요청하였는데, 양성지는 『고려사』와 전쟁에 대한 것이므로 변방에 주어서는 안된다고 여겨 지방의 『고려사』를 모두 거두어 들이고, 영안도에는 사서와 오경을 줄 것을 청하였다.

4. 정조대 『눌재집』 간행의 의미

이처럼 양성지는 15세기 우수한 수많은 문화 정책을 건의하여, 문물 예악의 정비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양성지의 이러한 정책은 400여년의 세월 동안 잊혀졌거니와, 오히려 당시의 사관은 그의 줄기에서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적고 있다.

上書하여 建論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모두 迂闊하여 쓸 만한 것이 못되었다. 어느 날 封章 십여 통을 가지고 春秋館의 僚屬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가 평소에 아꼈던 것인데 『史記』와 아울러 기록할 만하다.'고 하였으나, 여러 요속들이 증방할 것이 없다는 것으로써 비난하자 양성지가 오히려 비밀히 청탁하였는데, 마침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크게 화를 내면서 自責하여 이르기를, '老夫는 쓸모가 없도다.' 하였다. 뒤에 곧 前後 疏章을 모아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南原君奏議'라 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

하기를, ‘世祖께서 나를 王佐之才가 될 만하고, 諸葛亮에게 건주시까지 하였다.’고 하니, 듣는 자들이 세조의 下敎가 譏刺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³⁴⁾

양성지는 자신의 정책 제안을 크게 자부하였으나, 400여년의 세월 동안 양성지는 9년 동안 대사헌을 지낸 고사로만 일컬어졌다. 그러다가 중종 군주 正祖에 의하여 크게 부각된다. 정조는 즉위년(1776) 9월 25일 奎章閣을 창덕궁 禁苑의 북쪽에 세우고 提學·直提學·直閣·待敎 등 관원을 두었는데, 주로 御製를 봉안하기 위한 조처였다. 이때 실시된 제도의 틀이 바로 양성지가 세조에게 올린 건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숙종 때 列聖의 御製·御書를 봉안하기 위하여 별도로 宗正寺에 小閣을 세우고 御書한 ‘奎章閣’ 세 글자를 揭示하였으나 規制가 갖추어지지 않다가, 정조에 이르러 이 제도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정조는 宋代의 전례를 따라 列祖의 어제·어필을 따로이 尊閣에 받들어야 하지만, 이것이 번거롭다 여겨 하나의 전각에 함께 봉안하게 하였다. 창덕궁의 北苑에 터를 잡아 설계를 하게 하되, 儉約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御製閣’으로 일컫다가 뒤에 숙종 때의 御偏을 옮겨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다. 양성지의 입안이 이로써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다.³⁵⁾

정조는 처음에 규장각 설립의 안이 양성지의 것과 부합한 사실을 몰랐던 듯하다. 정조 5년 8월 18일, 직제학 沈念祖는 세조 때 양성지가 청한 규장각의 제도가 당시 새로이 설치한 규장각의 제도와 부합됨을 지적하였다. 이에 정조는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다. 그때의 규모가 오늘날의 것과 謀議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으니, 이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고 감탄하였던 것이다.³⁶⁾

34) 『성종실록』 13년 6월 11일.

35) 정조 17년 1월 25일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조가 양성지의 摺陳을 전례로 둔 것으로 보아 국방에 대한 양성지의 글도 정조가 좋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양성지의 <備邊十策>도 정조때 훈편원의 절목을 만드는 데 참고가 되었다.

36) 다른 양성지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정조가 익히 알고 있었다. 정조는 양성지가 올린 일련의 건의문을 숙독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펼친다. 정조 5년 2월 13일, 정조는 양성지가 도서인을 찍자는 건의를 내각에 주지시켜 실행에 옮기고자 하였다. 또 정조 16년 3월 24일, 규장각에 대제학을 두도록 청한 양성지의 건의대로, 정조는 새로 설치한 규장각에 대제학을 두고자 하였다. 이 일이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조는 양성지의 문집을 수습하도록 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정조는 15년(1791) 5월 3일 “고 대제학 梁誠之가 규장각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각으로 하여금 그가 지은 글들을 모으게 했는데 듣건대 그 책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니 장차 간행을 해야겠다.”고 하게 된다. 이로 보아 양성지 문집은 편집이 정조 15년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이같이 문집 간행을 명하자, 이날 徐榮輔는 양성지가 직접 쓴 서찰 몇 폭을 그 후손에게서 얻었다고 하자, 정조는 “문집을 간행할 때 그것을 책 뒤에 함께 새겨서 넣도록 하라. 서문은 내가 지금 구상하는 중이다.”라 하였다. 또 판중추부사 李福源에게 발문을 지어 올릴 것을 명했는데 그가 규장각을 세운 초기에 제학을 지냈기 때문이었다.³⁷⁾

이처럼 정조가 양성지의 문집을 편찬 간행한 것은 규장각 설치의 정책 제안을 높게 평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정조가 직접 편찬하거나 편찬하도록 명한 책에 대한 경위를 적은 「群書標記」에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옛 홍문관 대제학 양성지의 시문이다. 모아서 편집한 것은 규장각을 건립하자는 의견이 오랜 세월을 두고 합치함이 있기에 그 말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생각하려 함이다. 양성지는 정세제민의 학문을 하였고 전고를 밝게 익혀 저술을 풍성히 남겼다.

此故弘文館大提學梁誠之詩文也。梁而輯之，爲其建閣之議，曠世有契，而用其言，思其人也。誠之治經濟學，明習典故，富有著述。〔『弘齋全書』 권184 「群書標記」〕³⁸⁾

- 37) 이와 함께 정조는 이날 통진에 살고 있던 양성지의 적손 梁好仁을 불러 蔭仕에 서용하고자 하였다. 양성지는 세조 4년에 통진 守安 大浦谷에 별서를 두고 木雁亭을 짓고 살았는데, 그 후손이 계속 이곳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죽은 후에도 이곳에 묻혔다. 양성지의 별서는 ‘北岡青松’, ‘南海諸島’, ‘東望三峰’, ‘西拱江都’, ‘桂陽秋月’, ‘隔岸漁火’, ‘寫峴僧舍’, ‘南浦漕船’ 등의 팔경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양성지는 이곳에 네 아들의 집도 함께 마련하여 나란히 살았다. 이에 대해서는 徐居正의 문집과 『눌재집』 부록에 실린 서거정의 시문에 자세하다. ‘訥齋’라는 호도 이곳의 거처 이름이다. 또다른 호 止足은 이곳의 軒名이다.
- 38) 『눌재전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본이 가장 온전하다. 본고에서는 태학사에서 장서각본을 영인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정조는 5월부터 『눌재집』의 서문을 구상하기 시작하여 이 해 6월에 서문을 완성하였다. 여기에서도 규장각 설치의 공이 양성지에게 있음을 기려 『눌재집』을 간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찍이 들었노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요, 제도를 경영하는 것이 어려우며, 만들어낸 자는 지혜롭다 여겨지기 어려우며, 이론 자는 신통하다고 여겨지기 쉽다는 말이 이를 두고 이론 것인가? 처음에 내가 규장각을 설치할 때 어떤 이는 “제도를 만들 때 굳이 우리나라의 전례를 따라야지 하필 송나라 것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좋다” 하고, 이에 대제학을 지낸 문양공 양성지가 세조에게 올린 것 중에서 세조가 양성지의 말이 행할 만하다고 칭찬한 것을 취하여 조정에 내린 다 음에 조정의 의논이 이루어졌고, 이에 규장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 규장각의 제도를 경영한 것이 문양공이다. 이제 단지 신통스러운 뿐이다. 그가 이 규장각에 공이 있음이 어찌 또한 크지 않겠는가? 그러나 규장각을 설치한 지 16년이 되었지만, 이 제도를 경영하는 고실을 가지고, 문양공에게 공을 돌려 칭송하는 자를 들어보지 못하였다. 내가 이를 개탄하여 각신들에게 명하여 공사의 기록을 두루 채집하고 그의 奏議와 雜著, 고금 체서 약간 편을 모으고, 부록을 뒤에 붙여, 판에 새겨 세상에 행하게 하노라.

嘗聞之矣。立制非難，經制難，創之者難爲智，成之者易于神明，此之謂歟。始予置奎章閣，或曰，“立制須遵本朝，何必宋朝云爾乎。”予曰，“諾。”迺取大提學文襄公梁誠之所以獻于光廟，光廟所以亟稱其可行者以詔之，然後朝廷議成而閣制立，則是閣之經制者文襄，而今特神明之耳。其爲有功於閣也，不亦茂乎？然閣之設，且十有六年，未聞以經制之故實，歸以詔之於文襄者，予是之慨，命閣臣博采公私載籍，彙輯其奏議雜著古今詩若干篇，附以附錄，而鈔板行於世。

서문의 앞부분이다. 정조가 직접 지은 이 서문은 李秉模의 글씨로 『눌재집』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서문 말미에 쌍행의 주석문이 실려 있다. 규장각이 설치되고 관원을 정한 다음, 33명의 관원의 이름을 써두었는데, 모두 양성지의 외손이어서 기이하다는 사실을 밝혔다.³⁹⁾ 정조는 이를 기려 『梁訥齋外裔譜』 1권을 내각에서 편찬하게 한 것이다.⁴⁰⁾ 그만큼 양성지의 공

39) 제학 黃景源, 李福源, 徐命鼎, 蔡濟恭, 李徽之, 金鍾秀, 俞彥鎬, 吳載純, 趙璵, 李性源, 鄭民始, 직제학 徐沿修, 沈念祖, 鄭志儉, 徐有防, 朴祐源, 李秉模, 金崙, 金載瓚, 직각 金勉柱, 徐鼎修, 徐龍輔, 鄭東浚, 鄭大容, 李晚秀, 尹行任, 徐榮輔, 대교 李崑秀, 金祖淳, 沈象奎 등이 이들이다. 이중 10세가 1명, 11세가 9명, 12세가 8명, 13세가 10명, 14세가 1명, 15세가 1명이라 한다.

을 높게 평가하고 싶었던 것이다.

『눌재집』이 완성된 날, 정조는 양성지를 奎章閣主人이라 일컫고, 그를 다음과 같이 극찬하고 있다.

양성지는 내각의 주인인데 문집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일이 우연이 아니다. 무릇 문장과 언행이 표리가 없어 전할 만한 것은 그 사어나 자손의 힘으로 세상에 석지 않게 한 것이 간혹 있지만, 그러나 눌재는 몇 백년 후에 후손이 영석하여 글이 산일되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표창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게다가 그의 실질적인 업적과 아름다운 계획은 정말 유용한 문자이니, 후세에 꾸미고 모의하는 자들에 비하여 논할 것이 아니다.

梁訥齋即內閣主人，而文集之成於今日，事非偶爾。且凡文章言行，無表異，可傳者，藉其師友子孫之力，不朽於世者，往往有之，而如訥齋幾百載之後，雲仍微替，巾衍散佚。予於此等人，必欲表章而發揮之，況其實績嘉謨，真是有用文字，非後之粉飾模擬之手所可比論乎。(『弘齋全書』 권162 「日得錄」).

『눌재집』의 발문을 쓴 原任 奎章閣提學 李福源 역시 규장각 문제와 함께 양성지의 上奏文이 질박하면서도 실용성이 강한 점을 높게 부각시키고 있다.

성군께서 문학을 중시하시어, 동방의 명현 석학이 남긴 작은 글이라도 모두 다 보셨는데, 공의 유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인쇄하도록 명하시고 서문을 쓰는 은총을 보이신 것은, 대개 부화함을 물리치고 실용을 귀하게 여겨서요, 규장각을 설치하자는 의논이 임금님의 뜻과 합치됨이 있어 공의 말을 실행할 만하다고 여겨 공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이 의논을 올린 것은 집현전이 막 폐지될 무렵이었는데, 이미 성스러운 세조께서 실행할 만하다는 은혜를 내렸지만, 실행에 옮길 겨를이 없었다. 이에 수백년 후에 성대한 문운을 만나게 되어, 규장각의 제도와 관원의 이름이 흰하게 일신됨에 따라 의례를 확충하고 절목을 꾸미게 됨에, 또한 공이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임금님께서 문득 “이는 문양공의 공이다.” 하셨으니, 성인이 남의 장점을 이루어주기 좋아하시는 덕이로다.

聖后右文，東方名碩之隻字片語，皆經乙覽，而於公遺稿，特命鐫梓，寵以升卷之文者，蓋將觀浮華，貴實用，而設閣之議，有契淵衷，行其言而思其人也。公之獻議，在於初罷集賢之餘，既蒙聖祖開可，而未之遑焉。迺於數百年之後，際會昌運，閣制官名，煥然一新，義例之推廣，節目之粉飾，又多公所未及言，而輒教曰，“斯乃文襄之功。”聖人樂成美之德。

40) 이 책은 『西庫書目目錄』에 서명이 보이지만, 현전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정조의 실용적인 문장론에 양성지가 부합함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정조가 “양눌재의 문장은 비록 발군은 아니지만, 오래 文苑을 장악하였고 경륜을 베푼 것이 극히 많이 볼 만하다. 유집을 특별히 명하여 간행하여 배포한 것은 대개 뜻이 있었다.(梁訥齋文章, 雖非出群, 久堂詞苑, 經綸設施, 極多可觀, 遺集之特令刊布, 蓋有意也.)”라 한 것도⁴¹⁾ 양성지 문장의 실용성을 주장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5. 『눌재집』의 간행 경위

이렇게 하여 나온 책이 丁酉字本 『訥齋集』과 목판본 『눌재집』이다. 정유자본 6권 3책의 『눌재집』은 현재 서울대 규장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본은 오대산 사고에 있던 것이며, ‘奎章之寶’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 장서각본은 표지 이면에 ‘赤裳山城’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奎章之寶’, ‘李王家圖書之章’ 등의 도장이 찍혀 있다. 四周單邊으로, 판심에는 雙花文魚尾가 새겨져 있고, 線裝本이다. 권두에 정조가 직접 짓고 홍문관제학 규장각검교직제학 李秉模가 쓴 奉教序文이 실려 있다. 제목이 ‘御製題梁訥齋奏議雜著古今詩卷’으로 되어 있으며 행서체로 되어 있다. 이어 凡例, 目錄 등이 차례로 실려 있다. 권1-5까지에 奏議가 실려 있으며, 권5에 雜著와 詩가 실려 있다. 권6은 부록으로 양성지에 관련된 당대 문사들의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끝에 양성지의 필적이 실려 있다. 서발과 함께 이 목적은 목판으로 인쇄한 것이다. 마지막에 이복원의 奉教跋文이 실려 있다.

이와 함께 정조는 湖南 감영에 명하여 정유자본을 복각하게 하였다.⁴²⁾ 『鏤板考』에는 『눌재집』 책판이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정유자본을 간행할 때 호남방백에게 명하여 목판본으로 다시 찍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林圀十六志』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기타 1840년의 『各道冊版目錄』 등에도

41) 『弘齋全書』 권164 「日得錄」.

42) 『弘齋全書』 권184 「群書標記」.

남원에 책판이 남아 있다 하였는데, 모두 정유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지금 전하는 것은 대부분 정유자본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정조의 명에 의하여 간행한 책들의 일반적인 예처럼 이 책에도 권두에 凡例가 수록되어 있다. 간행의 경위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기에, 이를 요약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1) 세조 8년에 공이 규장각을 설치하자고 건의하였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다. 정조 즉위년(1776)에 규장각을 설치하고 열성의 어제를 봉안하였는데 관원을 두어 책을 보관하게 한 것에 공의 의견을 많이 따랐다. 정조 15년(1791) 정조가 각신에게 명하여 후손에게서 공의 유고를 구하고, 역사책이나 기타 서적을 살펴 짧은 글이라도 모두 수집하여 6권으로 구성하였다. 법례는 모두 정조의 결재를 받았으며, 직접 서문을 쓰고 원임 직제학 이병로로 하여금 쓰게 하고 원임 제학 이복원으로 하여금 발을 쓰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규장각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선발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 문집 序次의 예는 시를 먼저하고 문을 나중에 실지만, 공의 저술이 經濟와 實用에 대한 것이고 시는 餘技이므로, 奏議를 먼저 실고 다음에 잡저, 고금시를 실는다. 이러한 차서는 文襄公 李之芳의 文集을 따른다.

(3) 공의 방략이 주로 국방 문제에 있는데, 備禦 初疏 15策, 二疏 3策, 三疏 4策, 便宜 18策은 목록에는 있으나, 文이 일실되었으므로 목록에만 나열한다. 朱舜尊의 『經義攷』의 예를 따르고, 각 목록 아래 佚이라 쓴다. <白雲洞記>, <親祀文廟頌>, <平朔方頌>도 이처럼 한다.

(4) 세조가 내린 시와 제현들의 시문 중에 공과 관련된 것은 別錄에 모아둔다. 사적이 여러 책에 흩어져 있는 것은 편집하여 遺事로 하였다. 그 아래 각기 그 서목을 주로 붙인다.

(5) 필자본 5책은 후손에게 얻은 것이고, 명신의 필적은 또한 진기하므로 권말에 본떠 새긴다.

(6) 초본에는 탈오가 많은데 고증할 수 없어서 缺字라 쓴다. 자구가 통하지 않는 것은 고증할 수 없어서 원본대로 그냥 둔다.

(7) 공의 글은 실로 우리나라 명현의 문헌의 시작이다. '家集 6권'이라는 말이 徐居正의 『家乘記』와 金然의 『海東文獻總錄』에 보인다. '奏議 10권'이라는 말 역시 『家乘記』에 보인다. 이들이 전체의 책이었으나 지금은 산일되어 고증할 수 없어 안타깝다.

(8) 규장각이 설치된지 16년이 되었는데, 관원에 제수된 자가 30인으로 모두 공의 외손이다. 주상이 이를 기이하게 여겨 권두 서문 뒤에 쓴다. 이에 명하여 世派를 고증하여 하나의 족보를 만들어 여러 각신들이 집에 보존하도록 한다.

범례에서 보듯이 정조가 양성지의 문집을 간행한 것은 그에 대한 대단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장각 관원인 30명의 외손들의 계보를 작성하여 특수한 족보 『梁訥齋外裔譜』를 만들게까지 한 것이다. 이처럼 정조는 문집의 편집에 각별한 정성을 쏟았고, 편집의 체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의 전례를 따랐다. 청대의 학자 李之芳은 奏疏에 뛰어난 인물인데 奏疏에 능하였던 그의 문집 체재를 따라 奏議를 가장 먼저 실었고, 목록만 남고 내용이 일실된 자료는 朱彝尊의 『經義攷』의 예에 따랐던 것이다.

범례에서 지적한 대로, 정유자본 『눌재집』 이전에 존재하던 양성지의 문집은 『家集』, 『奏議』 두 종이 있었다.⁴³⁾ 양성지의 <줄기>에 따르면 양성지가 올린 상소문이 당대에 인정되지 못하자 곧 前後 疏章을 모아 집에서 간행하고, 이름을 『南原君奏議』라 하였다고 한다. 『주의』는 제목 그대로 주의문을 모은 책으로 추정된다. 김수온의 <南原君奏議序>가 제작된 것이 성종 9년(1478)년이므로, 이 무렵에 이 책이 편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수온의 <南原君奏議序>에는 주의가 8권이였다고 한다. 성종 12년에 쓴 서거정의 <南原君家乘記>에는 『주의』 10권, 『가집』 6권이라 하였으므로, 『주의』의 권수가 김수온의 말과 다르다. 김안국의 <南原君神道碑銘>에도 『주의』 10권, 『가집』 6권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옳을 듯하다.⁴⁴⁾ 『주의』는 이미 17세기에 세대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가집』을 적고 있는 김휴의 『해동문헌록』에 『주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집』은 일반적인 시문집과 비슷하게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록에 실린 김수온이 성종 11년(1480)에 쓴 <南原君家集序>에 따르면 『家集』에는 詩賦와 記, 誦 등이 실려 있었다고 하고 있다. 또 <親祀文廟頌>, <白雲洞記>가 최근 제작한 것이라 하였으므로, 이들 글은 『家集』에 실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⁵⁾ 김수온의 서문은 성종 11년(1480) 12월 양성지가 죽기 두 해 전

43) 김두중, 『朝鮮古印刷技術史』(담구당, 1995), 천혜봉, 『韓國書誌學』(민음사, 1997) 등에서 『눌재집』 6권3책을 성종 13년(1482), 손자 朴大樹가 간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근거는 알 수 없다.

44) 權轍의 『海東雜錄』에는 『주의』 18권, 『가집』 6권이라 하였다. 『주의』의 권수도 또 다른데, 김안국과 서거정의 설을 따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東儒錄』에도 『주의』 10권 『가집』 6권이라 하였다.

에 쓰여진 것이므로, 『가집』의 편집이 이 무렵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대로 『가집』은 김휴의 『해동문헌록』에 소개되어 있다. 책명이 『訥齋家集』으로 되어 있고 6권이라 하였다. 이로 보아 17세기 정도까지는 『가집』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판고』에서 서유구는 『주의』와 『가집』이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한 것으로 보아, 정조대에는 이들 책자가 모두 일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역시 “김안국의 표비명에 『주의』 10권, 『가집』 6권이라 하였고, 김수온의 서문에서는 『주의』 8권이라 하였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전하지 않는다. 내가 각신 서영보에게 명하여 공사의 전적과 편지 조각을 두루 채집하여 다 찾게 하여 모아서 5권을 만들게 하였다. 여기에 다시 세조가 내린 시와 후인의 찬양하는 시를 붙여 부록 1권으로 만들었다.(金安國碑銘云, 有奏議十卷家集六卷, 金守溫序, 則奏議八卷, 然久軼不傳. 予命閣臣徐榮輔博采公私載籍斷簡殘篇, 靡不收攬, 裒爲五卷, 復以光廟賜詩及後人譔述, 爲附錄一卷.)”고 밝힌 바 있다.⁴⁵⁾

그렇다면, 정조가 간행한 『눌재집』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범례에서는 집안의 유고, 역사책이나 기타 서적이라 밝히고 있다. 정유자본 『눌재집』의 奏議 부분은 모두 실록에 실린 것이고, ‘古今詩’에 수록된 14편의 시는 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실린 것을 가져왔다. 다만 ‘雜著’ 중 간찰은 앞에서 본 대로 서영보가 양성지의 후손 집에서 구한 것이다.

그런데 1780년경 필사된 윤씨문고 장본 『冊版錄』에 따르면 남원부에 『눌재집』 7권의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정유자본 『눌재집』 이전에 목판본 7권의 『눌재집』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정조가 『정유집』을 만들 때 양성지의 후손에게서 유고를 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책이 목판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고증은 불가능한 실정이다.⁴⁷⁾

45) 이 두 편은 일실되었다.

46) 『弘齋全書』 권184 「群書標記」.

47) 필사본 윤씨문고 장본 『冊版錄』의 필사연대는 윤병태 교수가 이 자료를 영인하면서 붙인 해제에서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필사본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듯이 권수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도 높으며, 필사연대 자체도, 정조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

『눌재집』은 1938년 석인본으로 다시 한번 더 간행되었다. 양성지의 14대손 梁柱謙과 梁在奎 등이 정유자본 6권 3책에다 속집 4권을 더하여 4책으로 만들었다.⁴⁸⁾ 이때 속집 권말에 후손 양주겸의 발문을 덧붙였다. 『속집』은 권두에 범례가 실렸다.

(1) 선생의 문집은 정조가 친하 규장각 가신에게 명하여 수집 간행한 것이므로, 이번 중간에서 감히 바꾸지 않고 한결같이 原集에 따른다.

(2) 疏, 頌 및 기타 文 중에 原集에 빠진 것과 원집에 목록만 있는 것은 실록에서 찾아 속편으로 만들고 따로 재목을 만들어 붙였다.

(3) 실록에 실린 선생의 사적 중 빠진 것은 찾아 부록에 붙이되 긴요하지 않은 것은 빼다.

(4) 선생의 사적 중 실록과 『동국여지승람』, 『海東儒賢錄』 중에서 原集의 道事에 빠진 것은 부록에 붙인다.

이러한 범례대로 『눌재속집』에는 실록 등의 자료에서 양성지 관련 자료를 뽑아 정유자본 『눌재집』에 실리지 않은 것을 모았다. 권1에는 疏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유자본 『눌재집』에 목록만 제시되고 본문은 일실되었다고 한 것과, 아예 실리지 않았던 상소문을 실록에서 찾아 실었다. 권2는 雜著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실록의 자료를 취해 수록한 것으로, 정유자본 『눌재집』에 빠진 것들이다. 양성지의 시문이 정유자본 『눌재집』에는 매우 소략하지만, 잡지에서 <皇極治平圖序>, <龍飛御天圖序>, <親祀文廟頌并序> 등을 실어, 양성지의 문장 솜씨를 맛보게 하였다. 또 정유자본에서 서문만 있던 <平朔方頌>과 아예 실리지 않았던 <親祀文廟頌> 등 그의 樂章을 수록해두었다. 권3은 부록으로 정조가 규장각을 건립할 때 관련된 자료를 모은 것으로 실록 등에서 뽑은 것이다.

48) 이 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과 국립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Abstract

The Book Policy of Yang, Sŏngji and the Publication Circumstance of 『Nuljaejip』

Lee Jong-Mook

This study is a revealed work of the book policy of Yang, Sŏngji(1415-1482),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in the arrangement of literary policy of early Chosŏn and the publication circumstances of his literary collection, 『Nuljaejip』. Yang, Sŏngji was in charge of the work who publishes great number of books in various areas such as national defence, geography, and literature during the time of King Sejo and Sŏngjo. In addition, Yang, Sŏngji had stored the book of royal family by building Changsŏgak, made an easy maintenance by stamping on the books of the royal family, prepared for the book loss by printing many copies, and requested to establish the libraries in various locations. But only the partial policies such as the policies that stamping on the books carried out and the advanced library polic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Kyuchanggak were not been able to carry out.

Four hundred years later, Kyuchanggak had established when the book administering policy was accepted by King Chŏngjo who made Chosŏn famous as a country of treatise. King Chŏngjo appraised highly of the idea of Kyuchanggak policy by Yangsŏngji, published his literary collection by the king's order, and put the foreword written by the king himself in the beginning part of the collection. 『Nuljaejip』, a Yangsŏngji's literary collection, was published by Kŭmsokhwajja, the metal movable type of printing, called, "Chŏngyuja", and was printed again by Mokpan, the wooden unmovable type-of printing, in Kamyŏng, Honam province.

Yangsŏngji's literary collection had passed down partially up until that time but his collection became complete from that time on. 『Nuljaejip』 of six volumes and three books is located currently in Kyuchanggak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sŏgak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that it shows us to see Yangsŏngji's insight of his book policy.